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11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조응천·한준호·임종성

김진표 • 장철민 • 박영순

조오섭 · 오영환 · 김영주

문정복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현황을 보면 서울은 철도 이용률이 2 0% 이상으로 비교적 철도 이용률이 높지만 경기-인천의 경우 10%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일반철도도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반철도역에 환승을 위한 주차 장 건설과 지원이 이루어지면 철도 이용률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편 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현행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어려운 실정입니다.

이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 범위를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철도역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 입니다(안 제11조의6제3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·도지사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에는 제2항에 따라 시·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4.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외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 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 중 시·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법률 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 법률 제17448호 대도시권 광역교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1조의6(부담금의 배분 및 사 제11조의6(부담금의 배분 및 사 용) ① • ② (생 략) 용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 <단서 다만. 시·도지사는 제3호 또는 제4호 신설> 에 해당하는 용도에는 제2항에 따라 시·도에 설치된 지방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서 사용할 수 있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「도로법」에 따른 특별시도 (特別市道)・광역시도(廣域市 道). 지방도 및 시도(市道)·군 도(郡道)·구도(區道) 중 시·도 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 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 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 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

는 개량. <u>이 경우 시·도지사</u> -----. <<u>후단 삭제></u> 는 제2항에 따라 시·도에 설 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 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 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4. (생략)

4.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 장 외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 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 한 일반철도 역 인근에 설치 되는 주차장 중 시·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 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